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 등 〉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03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률 제명의 변경 등	2
2. 남북인권협력사업의 추진	4
3. 재단 명칭 및 사업내용 변경	6
가. 북한인권재단의 명칭 변경 등	7
나. 재단 사업에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개발협력’ 추가	7
4. 위원회 위원과 재단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9
5.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신설	14
※참고자료: 제19대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의 논의 내용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정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7. 16.
3. 회 부 일 : 2025.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법률 제명의 변경 등

-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현행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현행	개정안
<u>북한인권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u>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u>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 <u>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생략)

-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북한인권’ 대신 ‘남북인권협력’을 법률 제명과 목적¹⁾,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 그리고 재단

1) 현행 목적조항 중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고 봄.

명칭 및 그 사업내용 등에 반영하고 있음.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 변경은 남북관계의 발전, 인권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확대 의지 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목적 조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반적 기조 및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제명과 목적 조항만으로는 입법 취지 달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안이유에 제시된 개정 취지와 법률 조문이 일치하도록 남북인권협력의 원칙·기준 또는 그 핵심 취지가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이하의 다른 조항들에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아울러, 이 법의 현행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하려는 취지 및 그 효과와 함께 이 법이 2005년 8월 최초 발의된 이후 10년여 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연혁²⁾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붙임 [참고자료: 제19대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의 논의 내용] 참조.

2. 남북인권협력사업의 추진

- 개정안은 제7조의 제목을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에서 “남북인권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으로 남북인권대화, 남북인권협력 관련 남북공동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남북인권협력사업의 추진) ① -- 남북인권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1. 남북인권대화 2. 남북인권협력 관련 남북 공동 조사·연구 3. 그 밖에 남북인권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남북인권협력사업 중 남북인권대화 -----. ③ 남북인권협력사업의-----.

- ‘남북인권협력’은 문구 그대로 인권증진을 위한 남한과 북한의 협력으로 볼 수 있으며, 학계에서는 ‘남북한 인권협력’의 개념을 ‘남북한이 국제 인권 원리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음.³⁾

3)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개선 협력방안 연구(2020.12.), p.6.

- 개정안은 남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과정인 남북한 인권협력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현행의 ‘남북인권대화’ 외에 ‘남북인권협력 관련 남북 공동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남북인권대화’ 개념이 ‘남북인권협력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협력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의 적용대상이 북한주민 외에 남한주민, 제3국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법 시행령에서 공동 조사·연구 등 사업 유형과 대상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통일부는 남북인권협력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제명을 포함한 개정 조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결격사유 신설에 대해서는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 법무부는 안 제7조의 “남북인권협력사업”과 안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발협력” 개념이 불분명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⁴⁾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단 명칭 및 사업내용 변경

- 개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명칭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하고, 주요 사업의 내용도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에서 ‘남북인권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u>북한인권 실태</u> 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등 <u>북한인권증진</u> 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u>북한인권재단</u>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남북인권협력재단의 설립) ① - -- <u>남북인권협력의 추진 실태</u> ----- ----- <u>남북인권협력</u> ----- ----- <u>남북인권협력재단</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③ ----- ----- -----.
1. 남북인권대화 등 <u>북한인권증진</u> 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 <u>남북인권협력</u> ----- -----
가. <u>북한인권 실태</u> 에 관한 조사·연구	가. <u>남북인권협력의 추진 실태</u> ---
나. <u>남북인권대화</u>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나. <u>남북인권협력</u> ----- -----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u>인도적 지원</u> 등 <u>북한인권증진</u> 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u>인도적 지원, 개발협력</u> 등 <u>남북인권협력</u> -----
가. 북한 내 <u>인도적 지원 수요</u> 에 관한 조사·연구	가. ----- <u>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수요</u> -----
나. <u>대북 인도적 지원</u> 을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나. <u>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u> ----- -----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가. 북한인권재단의 명칭 변경 등

- 개정안이 재단의 명칭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 및 법률 제명 등의 개정과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재단의 업무인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남북인권협력 실태조사’ 등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북한주민’의 인권에서 남한주민은 물론,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등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3일⁵⁾ 이 법 제정 이후 설립위원회가 위촉되어 2016년 8월 재단 정관을 제정하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른 국회의 재단이사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25년 9월 현재까지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나. 재단 사업에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개발협력’ 추가

- 개정안(제10조제3항제2호)은 현행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등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협력’⁶⁾을 추가하고 있음.

5) 「북한인권법」 법률 제14070호, 2016.3.3., 제정, (시행 2016.9.4.)

6)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며, 대다수 선진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외교부 > 외교정책 > 개발협력, https://www.mofa.go.kr/www/wpge/m_3816/contents.do(검색일; 2025. 8.28.).

-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발전이 필수적인 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인권개선의 국제적 기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ODA 설계원칙, 투명성·책임성 담보, 수원주민 생활 실질개선 중심 등 구체적 추진방식은 이 법 시행령 등에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봄.

4. 위원회 위원과 재단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 개정안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남북인권협력재단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 및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의 직에서 해촉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재단의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안 제1호) 또는 이 법8)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 「남

-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8) 「북한인권법」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1)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안 제3호) 등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이 법 제10조에 따른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로서, 그 자문 결과가 행정기관(통일부)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1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또한, 재단 임원의 경우 국가정책 상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공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임용자격과 통일부 소관 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고 보이므로, 그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및 재단 임원에 대하여 구분 없이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이나 자격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어 공무담임권 행사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와 대상 자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목적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¹²⁾¹³⁾

□ 참고로, 결격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심의·의결기관 성격의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¹⁴⁾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

12)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13)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전면개정판), p.369.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면, 재단 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예가 다수 있고,¹⁵⁾ 아직 출범하지는 못하였으나 동 재단의 정관에도 결격사유를 이미 규정¹⁶⁾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북한인권재단 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 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신설

-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과 재단 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재단의 임원에게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동 개정안은, 안 제12조의2제1항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¹⁷⁾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항이라 할 수 있음.¹⁸⁾
- 다만, 현행법은 제16조에서 재단의 임·직원에 대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¹⁹⁾을

17)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므로(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하여 경합범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4.9.25., 2013헌바208).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동 개정안에서도 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3헌바208 결정요지 중 발췌 >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선출된 임원직에서 당연히 퇴임하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선거범죄가 선거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하여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되고자 하거나 이미 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그 자격을 박탈당함으로써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18)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전면개정판), p. 365.

19)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당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즉, 위원회 위원 또는 재단 임원이 일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
형을 분리하여 선고토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조문 신설을 위해서
는 위반행위, 즉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를 먼저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벌칙 유형(법정형)도 별도 규정되어야 함.²⁰⁾

문 의 처
02)6788-5269

20)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① 처벌이 필요한 위반행위 유형 → ② 그에 대한 벌칙조항(징역·벌금·과태료 등) → ③ 분리선고”의 3단계가 법률에 유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즉, 구체적 “위반행위”와 “벌칙(벌금형 내지 형벌)”이 개정안에 명시되어야만 안 제12조의3 조문 신설도 가능.

[참고자료]

제19대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의 논의 내용

- 제17대 국회에서 황진하 의원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제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2016. 3. 3.)되기까지 총 19개²¹⁾의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음.²²⁾
-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11건)의 심사과정에서 북한주민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관점과 구체적인 북한주민 인권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음.²³⁾

< 제19대 국회 북한인권 관련 법안 현황 >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2012. 6. 1.	• 북한인권자문위원회 •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 북한인권재단 설치(심윤조의원안 제외)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 •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황진하의원	2012. 6.15.	
	이인재의원	2012. 8.20.	
	조명철의원	2012. 9. 5.	
	심윤조의원	2013. 3.29.	
	김영우의원	2014.11.21.	
북한민생인권법안	윤후덕의원	2013. 7.25.	• 인도주의 정보센터 설치 • 인도주의 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정청래의원	2012.11.19.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지원 •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의 신고 •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의원	2013. 9.17.	• 인도적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삶의질 향상 • 인도적지원 원칙 명시 • 인도적지원 참여 민간단체 지원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재권의원	2013.11. 4.	•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 없이 추진 • 북한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 북한임산부 및 영유아지원사업의 신고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2012.11.15.	•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 • 인도적 지원센터 설치 * 2014.4.25 철회
북한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2014. 4.28.	• 남북인권대화 추진 및 인권대화 자문위원회 설치 • 인도적지원협의회 설치 ※ 자유권증진은 인권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제안 이유) • 인권정보센터 설치

자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406호) 검토보고서, 2022.11. p.5 재구성

-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법안’이라는 제명의 제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정권의 특성상 인도적·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주민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침해 및 그 개선에 중점을 두고, 향후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인권실태 조사와 독일(서독) 중앙기록보존소²⁴⁾ 사례와 같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강조하였음.
- 반면, 북한인권의 범주로서 북한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 입장의 경우, 정치적 접근으로는 북한주민의 실제 인권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²⁵⁾
- 법률 제명과 관련하여도, ‘북한인권법’으로 하는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법률의 주요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제명이어야 하므로 ‘대북인권 지원 개선을 위한 재단 설립 및 기록보존소 설치에 관련된 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²⁶⁾
 ‘북한인권법’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 또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적 조치를 위한 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음.²⁷⁾
-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통합하여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법안」(6건)에서 제안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제10조에,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담당 기구(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내용은 제13조에 각각 규정되었으며,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 등에서 제시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내용’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제8조(인도적 지원)에, 자유권 증진을 위한 방안인 ‘남북인권대화’의 경우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에 각각 규정되었음.

-
- 21) 제19대 국회 심재권 의원이 발의하였다가 철회한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 제외
- 22) 제17대 국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11월까지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북한인권법안(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됨.
- 23) 제321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3호, 2013.12.24. pp. 26~31.
- 24) 독일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 Salzgitter)는 동독 정권의 인권침해와 범죄행위를 자료로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한 특수 기관으로,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 직후 서독 각 주의 법무장관 합의로 설립.
- 25)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4.4.28.)
제3조(국가의 책무 및 기본원칙) ① ~ ③ (생략)
④ 국가는 북한 임신부 및 영유아 지원을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6) 제322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2호, 2014.2.20. p.15.
- 27) 제322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2호, 2014.2.20. p.16.